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재해저감기능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시설인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대·편익시설 면적제한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저류시설 등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 확대

(안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3항)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 포함을 검토하는 재해취약지역의 범위에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종합 재해취약성 1등급 또는 2등급 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방재시설 또는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과의 중복결정을 검토하도록 함.

나. 재해취약지역 인근 지역 시설의 재해저감기능 고려(안 제30조 및 제51조)

재해취약지역 뿐 아니라 재해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주차장, 광장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재해저감기능을 고려하도록 함.

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재해저감대책의 내용 구체화(안 제12조, 제59조, 제95조 및 제97조 등)

공공청사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재해위험지역 내 설치를 억제하거나 재해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 시에도 시설의 재해저감기능을 고려하도록 하며, 우수유출 저감, 열섬완화 등을 위한 식생대 조성 등을 검토하도록 함.

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6조의2제2항)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대·편익시설 면적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풍수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 1등급 또는 2등급인 지역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방재시설 또는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과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 후단 중 “직장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 주변 지역의 기온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가로수 등 식생대의 설치를 고려할 것

제14조의3제1항제4호 본문 중 “나무나 화초를 심”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植栽面)을 조성하”로, “식재면(植栽面)”을 “식재면”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나무나 화초를 심”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을 조성하”로 한다.

제19조의3제6호 중 “나무나 화초를 심”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을 조성하”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나무나 화초를 심”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을 조성하”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재해취약지역”을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나무나 화초를 심”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을 조성하”로 한다.

제51조제8호 중 “할”을 “하고, 침수방지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할”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저류·침투조”를 “저류·침투조, 빗물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재해취약지역에”를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본문 중 “나무나 화초를 심”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을 조성하”로 한다.

제5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 포장면의 바닥 높이 보다 낮게 할 것. 다만,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제5호 중 “녹지”를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 포장의 바닥 높이 보다 낮게 할 것. 다만,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제1항제5호의2 중 “빗물정원”을 “빗물정원, 옥상정원”으로 한다.

제81조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0호(중전의 제19호) 중 “제18호”를 “제19호”로 한다.

19. 공동구의 침수방지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89조제1항제16호 중 “빗물정원”을 “빗물정원, 옥상정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 포장면의 바닥 높이 보다 낮게 할 것. 다만,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95조제1항제12호 중 “재해”를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재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빗물정원”을 “빗물정원, 옥상정원”으로 한다.

제9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제101조제1항제4호 중 “빗물정원”을 “빗물정원, 옥상정원”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제152조제7호 중 “빗물정원”을 “빗물정원, 옥상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 ~ ③ (생략)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 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u>자연재해위험지구</u>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u>풍수저감종합계획</u> 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3. ----- ----- <u>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u> ----- ----- ----- <u>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u> ----- ----- -----

<신 설>

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 결정) ①·② (생략)

<신 설>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① (생략)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에 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 1등급 또는 2등급인 지역

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방재시설 또는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과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3. (생략)

③ 4. (생략)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①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8. (생략)

<신설>

② 3. (생략)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植栽面)의 높이를 보도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 직장어린이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

--.

2. 3. (현행과 같음)

③ 4. (현행과 같음)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 주변 지역의 기온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가로수 등 식생대의 설치를 고려할 것

② 3.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植栽面)을 조성하---
식재면-----

것. 다만,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5. ~ 8. (생 략)

②·③ (생 략)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
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
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
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전
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9. ~ 11. (생 략)

제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
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우선도
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 -----

-----.

5.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

---.

1. ~ 7. (현행과 같음)

8. -----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
재면을 조성하-----

9. ~ 11.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
조 및 설치기준) -----

-----.

1. ~ 5. (현행과 같음)

6.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u>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우선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u>	6. ----- ----- ----- ----- ----- <u>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을 조성하</u>----- ----- ---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 -----.
1.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u>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자전거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u>	1. ----- ----- ----- ----- ----- <u>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을 조성하</u>----- ----- ---
2.·3. (생략) ② (생략)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주차장의 결정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재해취약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② (생략)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3. (현행과 같음)

4.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

-----.

-----.

5. -----

-----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을 조성하-----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1. ~ 7. (생략)

8. 지하광장은 통풍 및 환기가
원활하도록 할 것

9. (생략)

10. 주민의 휴식·오락·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고려하고,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
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할 것

11. (생략)

12. 재해취약지역에 3천제곱미
터 이상의 역전광장, 일반광장
및 경관광장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광장의 규모 및 목적을
검토하여 지표에 계단형으로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공간
을 설치하거나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1. ~ 7. (현행과 같음)

8. -----
----- 하고, 침수방지시
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
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침
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
라 설치할 ----

9. (현행과 같음)

10. -----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

11. (현행과 같음)

12.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
에서 -----

13.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의 높이를 광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5.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13.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을 조성하-----
-----.

-----.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 포장면의 바닥 높이 보다 낮게 할 것. 다만,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
-----.

1. ~ 4. (현행과 같음)

5. ----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으-----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신 설>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5의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업무설비인 경우에는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은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6. 식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 포장의 바닥 높이 보다 낮게 할 것. 다만,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빗물정원, 옥상정원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u><신설></u>	<u>19. 공동구의 침수방지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u>
<u>19. 제1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할 것</u>	<u>20. ----- 제19호-----</u> ----- ----- ----- --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16. ----- ----- ----- ----- ----- -----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신 설>

② (생 략)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12.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
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
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
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
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

빗물정원, 옥상정원 -----

17.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어
식재면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 포장면
의 바닥 높이 보다 낮게 할
것. 다만,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
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가능
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
여야 하며, 재해 ---

13. -----

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② (생 략)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
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
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
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

빗물정원, 옥상정원 -----

② (현행과 같음)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

-----.

1. ~ 3. (현행과 같음)

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
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
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의 빗물
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5. (생략)

② ~ ⑤ (생략)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
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
준)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
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빗물정원, 옥상정원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
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
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의 빗물
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
준) -----
-----.

1. ~ 6. (현행과 같음)

7. -----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 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u>빗물정원</u>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 ----- ----- ----- <u>빗물정원, 옥상정원</u>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